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 등 의
설 립 ·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대, 불필요한 평가 부담 완화, 정책연구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평가주기를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조정하는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안)’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22.1.27)에 따라 평가결과 제출기한 변경 등 개편(안)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변경(안 제4조)

연구기관 원장의 경영목표 제출기한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함

나. 연구기관 원장의 해임요건 수정(안 제8조제2항)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에 맞추어 3년 단위 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원장의 해임요건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다. 연구기관 원장의 재신임 기준 수정(안 제8조의3)

- 3년 단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 원장의 재신임 기준이 되는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서 ‘최근 2년간의’ 문구를 삭제하고(제1항 및 제2항),
- 재신임 요건을 ‘평가결과의 최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로 변경하고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

라.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제출기한 변경(안 제20조)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로 변경

마.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제10조 및 제17조)

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안 제2조제3항)

- 국유재산 무상양여계약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이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2)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7조)

- 국가재정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기한 등 예산 순기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2년간의 해당”을 “해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월 31일”을 “4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17조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로 4월 30일까지”를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② (생략)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 ----- ----- ----- -----.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 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 기한) ----- ----- 6개월-----.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① (생략)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
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5. (생략)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
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
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
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
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
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
상위 등급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
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
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
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
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
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① -----

----- 해당 -----

----- 최상
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② -----
----- 연구기관 -----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
다.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
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
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
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
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
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
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
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
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
한) ① -----

----- 4월 20일-----
--.

② -----

-- 5월 20일-----.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
서 제출) -----
----- 5월 20일-----

-----.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
출) -----

-----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
내에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연 락 처	(044) 200 - 2572